

우리 사업장의 화학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일까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설비 변경 시에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화학설비, 위험물질의 양,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먼저 “특수화학설비”인지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란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물질의 온도가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으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운전온도 350℃ 이상이거나
운전압력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 위 설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2번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위험물질의 양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하루 동안
제조하는 양



하루 동안
취급하는 양



설비 내부(반응기 등)에
저장된 양



저장탱크 등 단위공정에
저장되어 있는 양

예시

하루 사용량은 적어도 반응기나 저장탱크 등에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다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용량
2톤

설비내부저장량
5톤

탱크 저장량
8톤

합계 15톤
(별표 9 기준량 이상)
→ **제출 대상**

※ 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별표 9 기준량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존 화학설비라도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생산량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순한 수리, 동일 규격의 부품 교체, 성능 유지 목적의 유지보수 등은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변경 목적이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이라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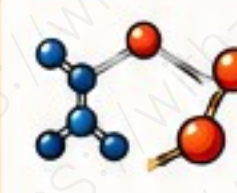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산량 증가를 위해
설비를 추가한 경우



기존 설비보다
큰 설비로 교체한 경우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변경한 경우



생산공정 변경을 위해
대상 설비를 추가·설치한 경우

4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 화학설비가 있으니 모두 제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 하루 사용량만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은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 ❌ 오래된 설비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기존 설비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실제 판단은 특수화학설비 여부, 위험물질의 기준량,
작공 전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5 설비 변경 전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 ☑ 공사가 완료된 이후보다 설계 및 변경 계획 단계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검토하세요.
- ☑ 사전 검토로 공사 중단, 일정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화학설비는 설비 종류뿐 아니라 위험물질의 양과
설비 변경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파트너 위도가 함께합니다!



제출 대상 여부
검토



특수화학설비
해당 여부 검토



위험물질
기준량 산정



주요 구조부분
변경 검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기술검토 및
심사 대응



화학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작공 전에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